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의 재검토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류시원*

- I. 들어가며
- II.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
 - 1. 지침의 성립 과정 및 개요
 - 2. 데이터베이스권의 내용
 - 3.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범위에 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해석
- III.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범위
 - 1.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
 - 2. 보호 범위 해석의 고려사항
 - 3. 데이터베이스권 규정과 관련된 해석 상 쟁점들
- IV.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1.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의 요지
 - 2. 대상판결의 의의
 - 3. 대상판결의 한계
 - 4. 전망: 데이터베이스권의 존치에 관해 재검토할 이유
- V. 나가며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전문박사.

초 록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은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그 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이 규정은 모델이 된 유럽연합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정보 독점에 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대법원은 최근 ‘야놀자 형사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BHB 사건’ 등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수용하여,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요건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대상판결’).

이 글은 대상판결을 계기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한 해석론을 우리 법의 해석에 차용하는 것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양 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유럽연합의 지침과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공통된 입법 목적을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고려하였으나, 일부 실시에서 발견되는 부주의함이 있어 지적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을 통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존치 여부에 관해 다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하여 가해져 온 비판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규범 확충 등의 법제 상황 변화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준물권적 보호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되돌아보게 한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차제에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 소재, 수집, 상당한 부분, 야놀자, 2021도1533

I. 들어가며

현대 산업의 구조가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정보의 저장단위인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보관, 활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경쟁 활동이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 과정에서 투하된 자본과 노력에 대한 법적 보호의 요청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그리고 국가 간 산업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1996년 유럽연합 차원의 지침(directive)¹⁾을 제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지침’으로 불리는 이 지침은 지난했던 제정 과정이 암시하듯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기에²⁾ 해석을 요하는 여러 추상적 요건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나아가 위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로 보호하는 독특한 체계를 취하고 있어, 재산권 보호 방식이 가져올 정보 독점 등의 우려가 동 지침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독자적 권리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론을 전개해왔다.³⁾

1)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hereinafter, ‘Database Directive’).

2)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제정 과정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Bitton, Miriam, “Exploring European Union Copyright Policy through the Lens of the Database Directiv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23 No.4(2008), pp.1419-1444.

3) 김현경,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3호(2022), 40, 46-47면; 정현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2호(2022), 182-183면.

우리나라가 위 유럽연합 지침을 모델로 삼아 2003년 개정 저작권법⁴⁾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전개된 해석론은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에도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웹크롤링 행위가 문제된 ‘야놀자 형사사건’에서 CJEU와 유사한 기준을 우리 저작권법에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보호 요건을 상당히 제한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타당한 해석 방법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저작권법 조항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내용과 CJEU의 해석론을 개관한 뒤(Ⅱ), 유럽연합 지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우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조항의 해석 기준을 도출한다(Ⅲ). 이어 위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의의, 한계 및 전망에 관해 검토하고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존치 여부에 관해 재검토할 이유를 밝힌다(Ⅳ).

Ⅱ.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

1. 지침의 성립 과정 및 개요

유럽연합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논의는 1990년 무렵부터 시작됐다. 이 시기 유럽연합에서는 정보기술 발달에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각 회원국의 보호 형식 및 원리가 크게 상이하였고, 그에 따라 회원국들 간의 규범 조화를 통해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의 교역장벽을 낮추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4) 저작권법(법률 제6881호, 2003. 5. 27. 일부개정).

투자 유인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더해 주요 데이터베이스 산업국인 미국과의 투자 간극을 메우려는 동기가 결합하여, 유럽연합은 1996년 데이터베이스의 재산권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제정했다.⁵⁾

논의 초기인 1990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보호 방식에 기반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회원국들 간 저작권 보호 전통의 차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국 1992년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초안⁶⁾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데이터베이스 소재(contents)⁷⁾에 대한 부정추출금지권(a right to prevent unfair extraction)에 의한 보호의 이중적 체제를 채택하였다.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만을 포함한 점,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 규정을 둔 점,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요건으로 상업적 목적을 요구한 점 등의 면에서 현행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이때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⁹⁾

5) See Bitton, *supra* note 2, pp.1422-1424. 이 문헌에서는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정의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던 사건으로, 네덜란드 법원의 *Van Daele v. Romme* 사건을 언급한다. 네덜란드어 사전 데이터베이스상의 230,000개의 단어를 복제하여 크로스워드 퍼즐 데이터로 활용하였던 이 사안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사실적 데이터의 집합물이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긍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다음 문헌을 참조. Hugenholtz, P. Bernt, "Chronicle of the Netherlands: Dutch Copyright Law, 1990-1995", *KIPDF*, 2001, <https://kipdf.com/fout-verwijzingsbron-niet-gevonden_5ab4184d1723dd349c815b14.html>, 검색일: 2023. 3. 13.

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COM(92) 24 final, 92/C 156/03 (Jun. 23, 1992).

7) 데이터베이스 지침에서는 'contents'라는 용어와 'materials'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지만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편집물)와 제19호(데이터베이스)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비추어 보면, 'contents'는 '소재'로, 'materials'는 '자료'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번역어를 사용한다.

8) See Bitton, *supra* note 2, pp.1430-1436.

이후 초안에 몇 차례 수정이 가해졌으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정 이전 회원국들은 데이터베이스 보호규범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면서 창작성 인정에 관해 높은 수준을 요구한 반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마의 땀(sweat of brow)’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와 달리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비창작적 데이터의 집합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 형식인 이른바 ‘카탈로그 규칙(catalogue rule)’을 운용하였다.¹⁰⁾ 이러한 규범체계 및 보호 기준의 차이에 각 회원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더해져 1995년경까지 지침안의 보호 범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1994년 4월의 TRIPs 제정과 디지털화·인터넷 산업 발달의 가속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보호체계 도입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5년경에는 대부분의 사항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 세부사항을 수정한 최종안이 1996년 2월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6년 3월 11일자로 발효되었다.¹¹⁾ 각 회원국은 1998년 1월 1일까지 동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요구되었으며,¹²⁾ 대부분의 나라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국내법 이행을 완료하였다.¹³⁾

9) 다만, 초안에 포함된 부정추출금지권의 성격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Bitton 교수는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체계라고 평가하는 반면(Bitton, *supra* note 2, p.1432), 다수의 학자들은 이를 부정경쟁법리에 기초한 입법 형태로 평가한다(Davison, Mark, “Database Protection: Lessons from Europe, Congress, and WIPO”, *Case Western Reserve Law Review*, Vol.57 Iss.4(2007), p.843; 한지영,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2005, 94면; 정현순, 앞의 글(주3), 171면 등). 생각건대, 동 초안에서 부정추출금지권을 ‘권리’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최종 채택된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달리 양도나 기타 승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에 의한 이용허락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Art. 8(1)) 이를 물권에 유사한 재산적 권리로 평가할 근거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투자한 자의 특수한 경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금지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10) See Bitton, *supra* note 2, pp.1420-1422.

11) *Id.*, pp.1436-1444.

12) Database Directive, Art. 16(1).

13) Hugenholtz, P. Bernt, “새로운 종류인 데이터베이스권: 유럽이 세계로 보내는 선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와 독자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비창작적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각 규정이 병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저작권 보호 기준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저작자의 독자적인 창작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이는 TRIPs 제10.2조와 사실상 동일한 기준으로서,¹⁵⁾ 영국의 ‘이마의 땀’ 기준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Feist* 기준¹⁶⁾으로 상향 조정한 것인 동시에,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일 것을 요구해 온 대륙법계의 ‘저작자 권리 체제(*droit d’auteur regime*)’에 비해서는 창작성 인정의 문턱을 다소 낮춘 것이다. 반면, 저작권 보호와 중첩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독자적 권리(이하 편의상 ‘데이터베이스권’이라 함)의 경우,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보호 근거로 설정함으로써 ‘이마의 땀’ 이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¹⁷⁾

2. 데이터베이스권의 내용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보호 객체인 데이터베이스를 “독립한 저작물, 데이터 기타 소재를 체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배열한 집합물로서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한다.¹⁸⁾

『정보법학』, 제7권 제1호(2007), 206면.

14) Database Directive, Art. 3(1).

15) Davison, *supra* note 9, pp.831-832.

16)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499 U.S. 340, 345 (1991).

17) Lipton, Jacqueline D., “Wikipedia and the European Union Database Directive”,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Vol.26 No.4(2009), p.637.

18) Database Directive, Art. 1(2)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database’ shall mean a collection of independent works, data or other materials arranged in a systematic or methodical way and individually accessible by electronic or other means”].

전자적 형태와 비전자적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나 운영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¹⁹⁾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규정한다. 이 장의 첫 조항인 제7조는 권리의 발생 요건을 “소재의 수집, 검증 또는 제시에 관해 질적으로 및/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 정하고 있다.²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들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질적으로 및/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추출 및/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며, 상당하지 않은 부분(*insubstantial parts*)이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출 및/또는 재이용하는 행위로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²¹⁾ 여기서 ‘추출(*extraction*)’은 그 방법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매체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며,²²⁾ ‘재이용(*re-utilization*)’은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물의 배포, 대여, 온라인 또는 기타 송신 형식에 의해 공중에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²³⁾ 데이터베이스권의 내용 중 추출에 관한 권리는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권에 대응하며,²⁴⁾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는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²⁵⁾ 이처럼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재산자에게 인정되는 거의 모든 지분권을 포괄한다.²⁶⁾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가 완

19) Database Directive, Arts. 1(1), (3).

20) Database Directive, Art. 7(1) [“... a database which shows there has been qualitatively and/or quantitatively a substantial investment in either the obtaining, verification or presentation of the contents”].

21) Database Directive, Arts. 7(1), (5).

22) Database Directive, Art. 7(2)(a).

23) Database Directive, Art. 7(2)(b).

24) 보다 정확하게는, ‘추출’은 소재의 삭제(*removal*)와 복사(*copying*)를 모두 포함하므로 저작물의 복제(*reproduction*)에 비해 포괄하는 범위가 더 넓다고 한다. Stamatoudi, Irini & Torremans, Paul, *EU Copyright Law: A Commentary*, 2nd ed., Edward Elgar, 2021, para. 9.46.

25) Davison, *supra* note 9, pp.833-834.

26) 정현순, 앞의 글(주3), 171면.

성된 날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15년간 보호된다. 보호기간 만료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공중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보호기간이 다시 기산되며, 계속적인 소재의 부가, 삭제, 교체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누적적 변경이 질적 혹은 양적으로 새로운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15년의 보호기간이 다시 부여된다.²⁷⁾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데이터베이스권이 양도, 이전, 계약에 의한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물권에 유사한 재산권적 속성을 지님을 분명히 한다. 지침 제정 논의 초기에 보호수단의 선택지로 제시된 계약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법리에 의한 보호, 저작인접권에 의한 보호,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에 의한 보호 가운데,²⁸⁾ 최종적으로 독자적 권리에 의한 보호를 선택한 것이다. 독자적 권리인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별 소재가 저작권 등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며, 소재의 저작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²⁹⁾ 지침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insubstantial parts*)에 관한 적법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주의적으로 규정하는 한편,³⁰⁾ 권리 제한사유, 즉 예외사유로서 (a) 비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사적 목적 추출, (b) 교육적 예시 (*illustration*) 또는 과학연구 목적의 비상업적 추출(출처 명시를 요함), (c) 공공안전 또는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위한 추출 및/또는 재이용을 열거한다.³¹⁾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한 위 각 예외사유는 같은 지침 제6조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사유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나,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전통적으로 승인되며 위 (a) 내지 (c)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예외사유들의 입법을 허용하는 제6조 제2항 (d)와 같은 조항이 없어 예외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초안에 포함되었던 강제허락 규정은 최종 채택된 지침에서 삭제되었다.³²⁾

27) Database Directive, Art. 10.

28) Bitton, *supra* note 2, p.1430.

29) Database Directive, Art. 7(4).

30) Database Directive, Art. 8.

31) Database Directive, Art. 9.

32) Davison, *supra* note 9, p.844.

3.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범위에 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해석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데이터베이스 보호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달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지침은 “상당한 투자”, “상당한 부분” 등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범위가 다수의 불확정개념에 의해 구획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³³⁾ 이에 따라 지침 제정 이후 이를 국내법제화한 회원국들은 저마다의 법적 전통에 기반하여 지침상의 보호요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적용하였고,³⁴⁾ 그 결과 규범 조화의 목표 달성은 요원했다.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범위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파생물 이론(spin-off theory)’³⁵⁾의 적용 가부에 관계된 것으로서 데이터 생성 작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베이스도 보호가 가능한지의 문제,³⁶⁾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고 그 제작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같은 대표적인 문제들을 비롯해 세부적인 적용에 관해서도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었는데, 이처럼 지침에는 해석상 난점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2004년 11월 9일 스포츠 마케팅에 관계된 데이터베이스의 무

33) 한지영, 앞의 논문(주9), 103면 참조.

34)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자신들의 카탈로그 규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국내법 이행을 위해 종전의 법제를 최소한으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판례들도 카탈로그 규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초기 영국의 판례들은 종래의 ‘이마의 땀’과 유사한 접근법을 그대로 고수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정 이후에도 그 국내법제화와 해석에 있어서 회원국들 간에는 여전히 부조화가 존재하였다. See Davison, *supra* note 9, pp.835-836.

35) 네덜란드 법원에 의해 발전한 ‘파생물 이론’은 데이터베이스가 단지 상업적 활동의 불가피한 결과 내지 부산물인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는 보호적격이 없다는 원리를 가리킨다. *Id.*, pp.837-838.

36) 한지영, 앞의 논문(주9), 103면, 각주 319 참조.

단 이용이 문제된 4건의 판결에서 위의 의문들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였다.

‘BHB 사건’³⁷⁾은 영국경마협회(British Horseracing Board)가 경마산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주마의 이름과 마주, 혈통, 조련사, 경기 일시와 장소, 코스 명칭 등의 방대한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들을 장외 도박 회사 William Hill이 동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유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제공한 사건이었다. 같은 날 선고된 3건의 판결은 모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 목록(fixture lis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도박회사들이 피고였던 사건이다. 후자인 ‘Fixtures Marketing 사건’³⁸⁾에서의 CJEU의 판시는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를 다소 구체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BHB 사건’의 판시와 주요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이하에서는 ‘BHB 사건’을 중심으로 CJEU의 기준을 소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Fixtures Marketing 사건’의 판시 내용을 부연한다.³⁹⁾

CJEU는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생성(creation)’에 대한 투자와 ‘수집(collection)’에 대한 투자를 구분하였다. CJEU는 지침 제7조 제1항의 “소재의 획득(obtaining)에 대한 투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독립한 자료들을 탐색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들을 뜻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구성하는 자료들의 생성에 사용되는 자

37) The British Horseracing Board Ltd and Others v William Hill Organization Ltd, C-203/02,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Nov. 9, 2004, ECLI:EU:C:2004:695.

38) Fixtures Marketing Ltd v. Oy Veikkaus Ab, C-46/02,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Nov. 9, 2004, ECLI:EU:C:2004:694; Fixtures Marketing Ltd v. Svenska Spel AB, C-338/02,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Nov. 9, 2004, ECLI:EU:C:2004:696; Fixtures Marketing Ltd v Organismos prognostikon agonon podosfairou AE (OPAP), C-444/02,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Nov. 9, 2004, ECLI:EU:C:2004:697.

39) ‘BHB 사건’과 ‘Fixtures Marketing 사건’에서 CJEU의 판시 내용을 쟁점별로 상세하게 소개한 문헌으로, 한지영,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영국경마협회사건과 football경기목록사건 -”, 『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2006) 참조.

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소재의 검증(verification)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는 동안 수집된 자료들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들을 의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될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검증에 사용되는 자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CJEU는 경주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자원들은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획득 및 검증을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⁴⁰⁾ 한편 ‘Fixtures Marketing 사건’에서 CJEU는 획득, 검증 외에 소재의 ‘제시(presentation)’에 관한 투자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그 판시에 의하면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처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자원들, 즉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의 체계적 혹은 기술적 배열, 개별 접속을 위한 조직화를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⁴¹⁾ 위 기준에 따라 CJEU는 ‘BHB 사건’과 유사한 견지에서 축구 경기의 날짜·시간, 홈팀과 어웨이팀 등을 포함하는 경기 목록의 작성에 투입된 인적·기술적 자원들은 경기 목록의 ‘생성’에 관한 투자이며, 경기 목록에 포함된 데이터들의 수집은 리그의 조직·운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경기 목록의 생성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별도의 투자를 요하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제1항 소정의 “소재의 획득, 검증 또는 제시를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⁴²⁾

한편, ‘BHB 사건’은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소재 정보를 획득한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제작자의 배타권의 내용을 이루는 추출 및 재이용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CJEU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추출과 재이용은 반드시 직접적인 접근(direct access)을 요하지 않고, 따라서 그 제작자에 의해 혹은 그의 동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가 공중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⁴³⁾

40) Case C-203/02, ECLI:EU:C:2004:695, para. 42.

41) Case C-46/02, ECLI:EU:C:2004:694, para. 37.

42) *Id.*, paras. 41-47.

다음으로 CJEU는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질적으로 및/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전체의 양(volume)과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관해서는 동 문언이 추출 및/또는 재이용 대상이 되는 소재의 획득, 검증 또는 제시에 관한 투자의 규모를 뜻한다고 보았다.⁴⁴⁾ 마지막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추출 및/또는 재이용으로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해서는, 해당 사항을 규정한 제7조 제5항의 취지가 같은 조 제1항을 우회하는 것을 막는 데 있고, 따라서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의 반복적·체계적 추출 및/또는 재이용의 누적적 효과가 제7조 제1항의 행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투자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즉, 제7조 제5항은 그 추출·재이용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적어도 상당한 부분을 재구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⁴⁵⁾ 이와 같은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CJEU는 추출 및/또는 재이용된 개별 데이터의 고유한 가치가 질적 상당성의 유효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⁴⁶⁾ 문제가 된 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왔던 종래 회원국 법원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배격하였다.⁴⁷⁾

CJEU는 2009년에 선고한 ‘Apis 사건’ 판결⁴⁸⁾에서 질적·양적 투자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pis가 불가리아의 법령·판례를 집적한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피고가 추출하여 별도의 법률 데

43) Case C-203/02, ECLI:EU:C:2004:695, para. 67.

44) *Id.*, para. 82.

45) *Id.*, paras. 85-89.

46) *Id.*, para. 78.

47) 한지영, 앞의 논문(주9), 113면.

48) Apis-Hristovich EOOD v Lakorda AD, C-545/07,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Mar. 5, 2009, ECLI:EU:C:2009:132.

이더베이스를 통해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법령 모듈과 판례 모듈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된 부분의 ‘양적 상당성’과 관련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모듈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해 CJEU는 각 모듈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해당 모듈을 기준으로 상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평가가 각 모듈이 개별화된 독립 상품으로 판매되는지와 같은 상업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듈이 독립하여 지침상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한편, ‘질적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추출된 데이터가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수집한 것이어서 해당 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만 입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유효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화되었다. CJEU는 제작자가 그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투입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에 따라서는 해당 자료들이 문제가 된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⁵⁰⁾ 나아가 문제가 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이 공적 데이터이고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국 법원으로서의 추출 및/또는 재이용된 자료가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지를 여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⁵¹⁾ 이로써 CJEU는 소재가 공개된(혹은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데이터베이스권 보호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49) *Id.*, paras. 65, 74.

50) *Id.*, paras. 25.3, 74.

51) *Id.*, para. 74.

III.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범위

1.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는 1994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부터 이미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비록 명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편집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된 “논문·수식·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⁵²⁾은, 보호요건으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점 외에는 현행법상의 데이터베이스와 큰 차이가 없다.⁵³⁾ 이와 달리 2003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이 아닌 편집물의 하위개념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없더라도 보호가 긍정된다.⁵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주체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⁵⁵⁾ 따라서 규정 형식 및 문언상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권리 성립 요건으로서 소재의 수집과 검증 등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복제등)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⁵⁶⁾ 개별 소재는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복제등

52) 저작권법(법률 제4717호, 1994. 1. 7. 일부개정) 제6조 제1항.

53) 이러한 입법 형식은 일본이 1986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현행 제2조 제1항 제10호의3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및 보호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54)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55)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56)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침해책임을 진다.⁵⁷⁾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권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소재의 저작권 보호 가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소재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⁸⁾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는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 규정이 준용된다.⁵⁹⁾

데이터베이스권은 양도될 수 있고, 이를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 물권에 유사한 독자적인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⁶⁰⁾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은 그 제작을 완료한 날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며,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은 그 갱신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⁶¹⁾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권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규정들을 준용하며, 비영리 목적의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전부나 상당한 부분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권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⁶²⁾ 또한, 저작권법은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및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를 데이터베이스권에 준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법정 허락의 대상으로 포섭한다.⁶³⁾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상호주의에 따라 보호되며,⁶⁴⁾ 이 점에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유사하다.⁶⁵⁾

57)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58) 저작권법 제93조 제3, 4항.

59) 저작권법 제96조, 제20조 단서.

60) 저작권법 제96조.

61) 저작권법 제95조.

62) 저작권법 제94조.

63) 저작권법 제97조.

64) 저작권법 제91조 제2항.

65) Database Directive, Art. 11(3), Recital 56.

2. 보호 범위 해석의 고려사항

(1)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개관

우리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물권에 유사한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동일한 입법 형식을 따른다. 또한 권리의 성립에 요구되는 상당한 투자를 “인적 또는 물적으로”라고 규정한 점에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질적 및/또는 양적으로”⁶⁶⁾ 혹은 “인적·기술적·재정적” 투자⁶⁷⁾와 표현상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당성의 측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포착한 것일 뿐, 종류나 형태에 관계없이 전 방면의 투자를 포섭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이용에 배타권이 미치는 점도 동일하고,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이용 형태인 ‘추출’과 ‘재이용’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복제·배포·방송·전송’에 사실상 대응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도 상호주의의 적용,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의 이용에 관한 간주 규정 및 그 내용(3단계 테스트와 유사하게 설정된 중국적 판단 기준) 등 유사점이 매우 많다.

이처럼 우리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권은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에 있어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므로, 보호요건 및 범위의 해석에 있어 유럽연합에서 전개된 해석론을 참조할 여지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상당한 투자”, “상당한 부분”,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와 같이 여러 불확정개념을 포함하고 있어⁶⁸⁾ 그에 대응하는 유럽연합 지침의 문

66) Database Directive, Art. 7(1).

67) Database Directive, Recital 7.

68) 함석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의 요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확정) -”,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2011), 125, 128-129면.

언에 관해 제기된 해석상 의문들이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고, 그에 따라 CJEU의 해석을 참조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조항에는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구별되는 일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CJEU의 해석론을 참조함에 있어 그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조항과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대응하는 규정 간의 주요한 차이점들에 대해 검토한다. 아래에서 기술한 것 외에도 세세한 규정 형식 및 내용 면의 차이들이 존재하나, 그중 일부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고 나머지는 CJEU의 판시 기준을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에 차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차이점이다.

2) 보호기간의 차이

첫째로, 권리의 보호기간이 유럽연합 지침의 15년에 비해 단기인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으나,⁶⁹⁾ 저작권법은 소재의 갱신등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⁷⁰⁾ 유럽연합 지침의 대응하는 규정에서는 계속된 추가·삭제·교체의 누적적 결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소재들의 상당한 변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⁷¹⁾ 이는 사실상 영구적인 보호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⁷²⁾

우리 저작권법은 갱신등을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체 데

69)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1022면. 투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면서 저작권접권에 비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보호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이상정,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상)”, 『창작과 권리』, 제23호(2001), 68-69면.

70) 저작권법 제95조 제2항.

71) Database Directive, Art. 10(3).

72) Bitton, *supra* note 2, pp. 1468-1469; Davison, *supra* note 9, p. 834; Lipton, *supra* note 17, p. 640; 한지영, 앞의 논문(주9), 100면; 안효질, “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 보호동향과 입법방향”, 『계간 저작권』, 제13권 제2호(2000), 77면 등.

이더베이스가 아닌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의 존속기간이 다시 5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지침과 조금 다르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보호기간은 유럽연합에서 제한 해석의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된 정보 독점의 장기화 우려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여지를 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규정에 대해 유럽연합에서와 같은 제한 해석이 그대로 수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러할까? 상당한 투자의 내용을 이루는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대한 투자는 개별 소재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총체적 투자의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현실적이다. 특히 ‘검증’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이용자가 검증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 보호기간의 도과를 주장·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지침과 구별되는 우리 법 규정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동 규정은 사실상 그 전체에 대해 반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여지가 크다. 아울러 데이터의 품질관리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최신성과 정확성이므로⁷³⁾ 오늘날의 데이터베이스는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소재들이 갱신·검증·보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내에서도 현행법상 상당한 투자의 계속을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상 영구적 보호를 제공받는 셈이라거나,⁷⁴⁾ 데이터베이스권을 반영구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⁷⁵⁾ 등이 존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의 지침에서 정한 15년에 비해 명목상 단기인 5년의 보호기간이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조항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73)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제12조 등 참조.

74) 오승중,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6, 1045면.

75) 한지영, 앞의 논문(주9), 46면.

3) 침해 간주 규정의 문언 차이

둘째로,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의 복제등이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간주되는 구체적 행위방식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⁷⁶⁾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에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repeated and systematic)” 추출 및/또는 재이용이라고 규정한 것⁷⁷⁾과 상이하다. 즉,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반복적 이용’과 ‘체계적 이용’이 선택적 관계인 데 반해, 유럽연합의 지침에서는 양자가 침해행위로 간주되기 위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누적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차이는 언뜻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 규정은 문언상 ‘반복적이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복제등’과 ‘반복적이지는 않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체계적인 복제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지침에 비해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의 폭이 넓다. CJEU는 ‘BHB 사건’에서 위 간주 규정의 의미를 그 누적적 결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재구성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면서 “행위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주요 근거로 적시했다.⁷⁸⁾ 이와 달리 우리 저작권법 규정의 문언이 포괄하는 행위, 즉 상당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복제등이 반복적이되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체계적이기는 하나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것이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과 유사한 결과를 낳으리라고는 통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적어도 형식상으로 우리 저작권법이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BHB 사건’에서의 CJEU의 판시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우리 저작권법이 침해 간주 규정을 둔 취지는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의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인 복제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작자의 투자

76)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

77) Database Directive, Art. 7(5).

78) Case C-203/02, ECLI:EU:C:2004:695, para. 87.

보호를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이 점에서 유럽연합의 지침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양자 모두 종국적 요건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상당한 투자를 보호하고자 한 입법취지⁷⁹⁾를 잠탈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 법상의 간주 규정 요건을 데이터베이스권의 일차적 침해 모습인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크게 부당한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반복적’과 ‘체계적’의 관계에 관한 문언 형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해석에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관한 CJEU의 판시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4) 권리 제한의 광협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예외(권리 제한)의 범위가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제9조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3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예외사유는 저작권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⁸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제6조 제2항 (d)에서 각 회원국의 법적 전통을 존중하여 종전 예외 규정의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달리,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지침 제9조에 열거된 것 이외의 예외사유 입법이 불허된다.⁸¹⁾⁸²⁾ 나아가 제9조의 각 사유들

79)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개정이유 첫머리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80) Lipton, *supra* note 17, pp.639-640.

81) See Bitton, *supra* note 2, p.1446.

82) 다만,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정 이후인 2019년에 발효된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 지침(Directive (EU) 2019/790)에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관련 복제·추출에 대한 예외사유 규정의 도입을 각 회원국에 추가로 의무화하였다. See Stamatoudi &

조차 예외의 범위가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다. 사적 목적 추출(a)의 경우 비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로 대상을 한정하여 산업상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주류적 형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교육이나 과학연구를 위한 추출(b)의 예외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두 제한사유는 오직 ‘추출’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재이용’은 배제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한층 좁다. 공공안전 등을 위한 추출 및/또는 재이용(c)도 일반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외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제9조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데, 실제 일부 회원국들은 국내법에 등 조의 예외사유들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⁸³⁾

이와 달리 우리 저작권법 제94조는 제2항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특유한 개별 권리 제한사유를 둔 것 외에도, 제1항에서 데이터베이스권 조항에 대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공정이용(제35조의5)을 비롯한 다수의 저작권 제한사유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제2항 각 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라고만 규정할 뿐 특정한 행위유형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비해 권리 제한의 폭이 넓다. 나아가 우리 저작권법은 비록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하나 유럽연합의 지침에서는 삭제된 법정허락 규정도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권리 제한 규정(특히 공정이용 조항의 준용) 및 법정허락제도의 존재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의 활성화라는 양 법익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유럽연합에 비하여 확충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관련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외에도 물권 방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차이점들과는 달리 이 점은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범위에 대한 CJEU의 제한 해석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를 환기시킨다.

Torremans, *supra* note 24, para. 9.67.

83) See Davison, *supra* note 9, p.835.

(2)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한 평가와 타국 법제 현황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제정 목표는 1)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의 통일과 조화를 통해 역내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2) 이를 통해 미국으로 대표되는 경쟁국과의 정보산업의 격차를 단축시키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⁸⁴⁾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지침 제정 초기에 각 회원국의 법원들 간에 해석 기준의 불통일에 따른 혼란이 있었지만, CJEU의 판례들을 통해 통일적 규범질서가 조금씩 정착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정책 목표의 달성에 지침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동 지침에 관해 실시한 재검토의 결과는, 2005년에 이어 2018년에도 물권 방식의 데이터베이스권 법제화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낳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⁸⁵⁾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흔히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되고,⁸⁶⁾ 논자에 따라서는 더 심하게 혹평하는 경우도 있다.⁸⁷⁾ 실패의 원인으로는, 지침 제정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시장 실패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기반한 권리자-이용자 간 이해관계의 세밀한 조율 과정이 아닌 성급한 시장 선취 의욕에 따른 정치력 행사의 산물이었다는 점,⁸⁸⁾ 여러 과학기술인단체들이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미국과 달리 유럽을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 등의 참여 없이 유럽출판인연맹을 비롯한 권리자 측 로비단체가 지침 제정 논의를 주도한 점⁸⁹⁾ 등이 언급된다.

84) Database Directive, Recitals 1-12; 오승중, 앞의 책(주74), 1050-1051면 참조.

85) 김현경, 앞의 글(주3), 40-41면; 김기정·송석현, “딥러닝과 데이터마ining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2021), 186-187면.

86)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2019), 107면. See also Maurer, Stephen M. et al., “Europe’s Database Experiment”, *Science*, Vol.294 No.5543(2001), p.790.

87) 호주 모내시대학교의 Mark Davison 교수는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보호 규정에 관해 ‘(재활용품 수거함도 아닌)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제안’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Davison, *supra* note 9, p.852.

88) Bitton, *supra* note 2, p.1444.

지침 제정 초기 정책적 효과의 증거가 부재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던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1996년 12월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에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조약안을 제출하였다.⁹⁰⁾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권 조항을 저작권법에 도입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⁹¹⁾ 그러나 이 조약안은 WIPO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고, 그 주요한 원인은 미국의 소극적 태도였다. 미국은 1996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최초의 것은 H.R. 3531 법안으로, 유럽연합과 유사한 배타권 부여 방식을 시도했으나 미국 내 교육 및 과학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1996년 하원에 상정된 뒤 폐기되었다.⁹²⁾ 이후 몇 차례 다른 형태의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역시 채택되지 못하였고, 2003-2004년 사이에 상정된 H.R. 3261 법안과 H.R. 3872 법안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들 법안은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비해 보호 강도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미국 내에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준다.⁹³⁾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정의하여⁹⁴⁾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만을 보호 대상

89) Davison, *supra* note 9, p.844.

9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Proposal for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Databases Consider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Certain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Questions”, Geneva CRNR/DC/6 (Dec. 1996), *cited from* Davison, *supra* note 9, p.850, n. 63.

91) 오승중, 앞의 책(주74), 1041면 참조.

92) Davison, *supra* note 9, p.846; 박준우,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시장의 정의와 경쟁의 효과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7권 제2호(2000), 921-923면.

93) Davison, *supra* note 9, pp.848-850.

94)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3.

에 포함한다. 일본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때에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여,⁹⁵⁾ 이를 특수한 종류의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저작물로서의 보호에 대하여 투자 노력(이마의 땀)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저작권법의 체계를 벗어나는 딜레마가 있다고 하며,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입법의 목표는 서 있지 않다고 한다.⁹⁶⁾

(3) 소결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은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다. 내용 및 규정 형식상으로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하므로, 유럽연합의 지침에 대한 CJEU의 해석론이 우리나라의 법규 해석에 참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비창작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준물권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이 저작권법의 전체 체계와 갖는 부조화와 그로 인한 정보 독점의 폐해 가능성, 나아가 그와 같은 법제가 유럽연합 외에 비교법적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⁹⁷⁾은 유럽연합에서 전개된 제한 해석론의 참조 필요성에 더욱 주목하게 한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유럽연합의 지침과 우리 법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차이점이 시사하는 바를 유념하는 가운데 CJEU의 해석론을 비판적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에 폭넓은 권리 제한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은,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이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95) 일본 저작권법 제12조의2.

96) 中山信弘, 『著作権法』, 第3版, 有斐閣, 2021, 165, 175면.

97) 정현순, 앞의 글(주3), 160면.

3. 데이터베이스권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 쟁점들

(1) 보호 대상: 체계인가 소재인가?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 이용에 관하여 그 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는 소재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면서 그 소재의 배열 또는 구성의 체계를 달리 한 경우 데이터베이스권의 침해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1)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들은 수집·검증·보충에 대한 투자의 결과이므로 그러한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이용한 이상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⁹⁸⁾ 2)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상 그 “상당한 부분”의 복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소재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배열이나 구성을 부분적으로나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 함은 ‘배열이나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소재의 개별적 접근·검색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⁹⁹⁾ 3) 데이터베이스권의 입법취지가 소재의 배열과 구성 등 편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개별 소재가 동일하지만 배열이나 구성이 다른 경우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침해 간주 규정을 예외 규정으로 보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소재 보호를 긍정하는 해석론을 제안하는 견해¹⁰⁰⁾ 등이 있다.

위의 견해 대립은 결국 데이터베이스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데이터베이스권이 보호하는 대상을 소재(들)로 보느냐, 아니면 그 배열·구성에 의한 접근·검색 기능으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위와 같은 상반된 견해들이 제기되는 근원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는 “상당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들

98) 이해완, 앞의 책(주69), 1016-1017면; 오승중, 앞의 책(주74), 1044-1045면.

99) 김기정·송석현, 앞의 글(주85), 198-201면.

100) 한지영, 앞의 논문(주9), 41-43면.

(contents)”로 명시되어 있으므로¹⁰¹⁾ 그 소재들의 상당한 부분이 이용되었다면 배열이나 구성을 달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반면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침해를 구성하는 이용의 객체가 소재들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인지가 다소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소재의 체계적 배열·구성 및 개별적 접근·검색 기능이라는 개념을 부가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어디까지나 소재의 집합물인 편집물일 뿐 창작성이 요구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소재의 배열·구성, 접근·검색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담고 있는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소재들의 배열·구성 등의 독자성이나 대체 여부 등을 침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위 2)의 견해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본질과 배치되므로 수긍할 수 없다.¹⁰²⁾ 소재들의 배열·구성 및 접근·검색 기능 구현에의 투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작”이 아닌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대한 상당한 투자만으로도 권리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점, 소재의 갱신등에 대한 추가

101) Database Directive, Art. 7(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a right for the maker of a database which shows that there has been qualitatively and/or quantitatively a substantial investment in either the obtaining, verification or presentation of the contents to prevent extraction and/or re-utilization of the whole or of a substantial part, evaluated qualitatively and/or quantitatively, of the contents of that database”]; Art. 7(5) [“The repeated and systematic extraction and/or re-utilization of insubstantial parts of the contents of the database implying acts which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at database or which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maker of the database shall not be permitted”].

102) 이 견해를 주장하는 문헌에서는 그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과 비교하여 그 보호 근거를 도출한다. 즉,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근거는 저작권의 창작성에 대응하는 ‘소재의 배열·구성을 통한 접근·검색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 (김기정·송석현, 앞의 글(주85), 191-193면). 그러나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과 유사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서, 2003년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현행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의 본질과는 조화되기 어렵다.

적인 상당한 투자는 보호기간 연장의 요건이 되어 사실상 반영구적 보호를 가능케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배타권의 핵심은 소재들의 배열이나 구성이라기보다 그 집합물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제작과 유지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¹⁰³⁾ 이러한 해석은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과도 조화된다.¹⁰⁴⁾

(2)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 객체는 개별 소재가 아니라¹⁰⁵⁾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소재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로써 보호하는 이유는 결국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 등에 투입된 자본·노력의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을 그 이용된 부분에 대한 보호가치, 즉 투자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CJEU의 ‘질적 상당성’ 판단 기준은 지극히 타당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유념할 점은 권리의 발생 요건인 ‘상당한 투자’와 침해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에 공통된 “상당한”이라는 표현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는 절대적 기준인 반면 후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에 호응하는 상대적 기준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데이터베이스권의 발생을 위한 상당성의 기준은 완화하면서 침해를 위한 상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도의 존재 의의와 실효성을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식의 접근 방법은 입론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103) 안효질, 앞의 글(주72), 66, 78면 [“데이터베이스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있다.”, “결국 적어도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은 그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망라성 및 정확성이 관건이고, ...”].

104) 유럽연합 저작권법 주석서에서는 유럽연합이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에 의한 보호체제를 채택한 이유에 관해, ‘저작권은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소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Stamatoudi & Torremans, *supra* note 24, para. 9.32.

105)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본문, 제4항.

현실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침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권리의 인정에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그중 복제등이 된 부분의 투자에 비해 필연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지, 상당성의 기준을 달리 운용한 결과가 아닌 것이다.

CJEU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문언에 충실하게 ‘질적 상당성’과 ‘양적 상당성’을 각기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이 중 양적 상당성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이용된 부분의 양적 대비를 통해 판단한다는 것이 ‘BHB 사건’ 등을 통해 CJEU가 확립해 온 기준이다. 그런데 이처럼 전체 데이터베이스와의 양적 비교에 의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위의 방법에 의하면 동일한 양의 소재들을 이용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클수록 양적 상당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더 큰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어 통상 더 큰 보호가치를 갖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약화시키게 된다. 둘째로, 권리 발생을 위한 투자의 상당성 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양적으로 비교하여 상당한 비율이 이용되었더라도 그 이용된 부분은 상당한 투자의 결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이용된 부분의 투자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는 질적 상당성 기준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법적 보호가치가 미약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과도한 보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준물권적 보호에 대해 제기되는 정보 독점 등의 우려와 사실상의 반영구적 보호에 의해 그 우려가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적 대비 방법의 형식적 적용이 낳을 수 있는 위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와의 대비에 의해 양적 상당성을 판단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보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은 단위들로 분할하여 운용할 유인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비록 모든 경우에 당장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대상판결과 같이 CJEU의 양적 상당성 기준을 원용한 사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그 유인은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유인에 따르는 사업 관행이 누적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여러 산업분야의 비효율이 늘고, 결국

소비자 후생이 일정 정도 저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에 더해 우리 저작권법은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달리 이용된 부분의 상당성을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적/질적 구분 없이 입법취지에 충실한 질적 상당성 기준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술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CJEU의 ‘질적 상당성’ 기준을 통해 ‘양적 상당성’ 기준을 보완하여 대처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질적 상당성 기준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양적 상당성만으로 판단할 때의 ‘1종 오류(Type- I error)’¹⁰⁶⁾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배타적 권리로써 보호하는 것에 관해 제기되는 우려의 성격에 비추어 2종 오류보다 1종 오류의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적 상당성 기준을 폐기할 실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양적 상당성 기준은 침해 입증과 보호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상당성은 어차피 불확정의 상대적 개념이므로 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남는다. 관점에 따라서는 사안마다 이중의 기준을 적용해 예측가능성의 곤란을 배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적 및 질적 기준을 통합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양적 상당성 기준의 ‘폐기’라는 선택의 과감성에 법원이 부담을 느낀다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양적 상당성의 판단에 있어서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선택지가 있다. 즉, 양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에 이르지만 이용된 부분이 상당한 투자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분량에 해당할 경우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의 판단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질적 상당성 기준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06) ‘1종 오류(Type- I error)’란 논리학에서 거짓인 명제를 참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말하며, 참인 명제를 거짓으로 판단하는 ‘2종 오류(Type-II erro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본 논의의 맥락에서는, 보호가치가 미약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쉽게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침해 간주 규정

우리 저작권법은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복제등은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 보면서도, 그것이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행해져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침해로 간주한다.¹⁰⁷⁾ 이 규정에 관해서는 재산권 보호의 비대화(over-propertization)¹⁰⁸⁾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그 적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 침해 간주와 관련된 단서 부분의 삭제를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독립한 권리 인정의 근거로 삼기보다 권리가 인정될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 정도로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나,¹⁰⁹⁾ 개별 소재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를 긍정하여 제작자의 투자 보호와 공중의 정보 유통의 자유 보호 간의 균형점을 탐색하여야 한다는 견해¹¹⁰⁾ 등이 이에 해당한다. CJEU가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제5항과 관련하여 ‘BHB 사건’ 등에서 실시한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라는 기준은 앞서 언급한 우려들과 유사한 배경에서 위 지침상의 간주 규정이 침해행위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safeguard clause)’로서 도입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¹¹¹⁾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내용에 있어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성이 뚜렷한 우리 저작권법의 침해 간주 규정에 대하여 CJEU와 유사한 해석론을 적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는 간주 규정의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침해 요건이 형식상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술한 우려들을 유념하면서 해

107)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108) ‘Over-propertization’은 Lipton 교수가 정보 또는 데이터의 집합물을 물권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Lipton, *supra* note 17, pp.635-636.

109) 함석천, 앞의 글(주68), 128-129면.

110) 한지영, 앞의 논문(주9), 43면.

111) Case C-203/02, ECLI:EU:C:2004:695, para. 85.

석에 신증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에는 유럽연합의 지침과 달리 “반복적”과 “체계적”이 선택적 관계로 연결되어 문언상 침해로 간주되는 범위가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또한 참고로, “반복적” 복제 등의 경우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에 해당하는 단일한 행위의 시적(時的)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분마다 반복되어 총 10시간 동안 행해진 복제등이 단일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제93조 제2항 단서 해당 여부로 쟁점이 옮겨갈 것이고, 이는 소송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위의 시적 단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사실 요소와 규범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판례의 축적을 통해 규명할 과제일 것이다.

IV.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의 요지

피고인¹¹²⁾과 피해자는 숙박업소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 호출 명령구문을 역분석해서 만든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API 서버에 접근해 피해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약 4개월간 피해자의 API 서버에 약 1,600만 회 접속하였고, 약 5개월 반 동안 26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제휴한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3개 내지 8개 항목 단위로 수집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등), 저작권법위반죄,

112)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는 피고인 회사 외에 그 대표이사과 직원들이 포함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피고인 회사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컴퓨터등장에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¹¹³⁾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원심¹¹⁴⁾은 위 범죄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¹¹⁵⁾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해 판단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 간주 규정에 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체계적 복제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한 뒤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저작권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API 서버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의 숙박업소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한다. 둘째, 위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피해자의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관한 자료가 없다. 셋째, 이러한 피고인의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1777 판결.

114)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11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대상판결의 의의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이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대법원은 그간 여러 사건을 통해 권리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판단 기준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가 복제되었던 ‘리그베다위키 사건’¹¹⁶⁾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상당한 부분의 혹은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복제등이 문제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한다.¹¹⁷⁾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복제등이 된 부분의 질적/양적 상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우리 대법원이 CJEU의 해석 기준을 원용하여 상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질적 상당성에 관해 개별 소재의 가치나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CJEU의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해석을 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대법원이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간주 규정의 의존도가 약화되고 “상당한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공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¹¹⁸⁾ 이는 ‘간주 규정으로의 도피’ 현상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116)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다204315 판결.

117) 이해완, 앞의 책(주69), 1015면.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불상고 확정, ‘물가정보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 판결(심리불속행기각, ‘잡코리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04441 판결(심리불속행기각, ‘경매정보 사건’) 등.

118) 또한, 대법원은 침해 간주 규정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도 CJEU의 해석론을 수용하였는데,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사실상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에 준하는 결과 발생을 요구함으로써 그 판단 기준이 상당성의 그것에 근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 요건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준물권적 보호 방식에 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를 인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 보호와, 정보 공유의 저해 및 경쟁 제한의 부작용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당한 부분”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와 같은 불확정개념 요건의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한계

(1) 양적 상당성과 질적 상당성의 관계의 모호성

대상판결이 “상당한 부분”의 판단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은 다분히 이 두 측면을 명시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관한 해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후자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은 대상의 속성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관점의 하나이며, 판례도 사안의 입체적 분석을 위해 법문에 없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예가 적지 않다.¹¹⁹⁾ 따라서 대상판결이 상당성의 양적/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실시한 것만으로 법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크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당성을 두 측면을 나누어 살피는 관점을 수용한다고 할 때 대상판결에서 문제로 보이는 지점이 있다. 양적 상당성과 질적 상당성의 관계가 명확하게 실시되지 않아 복제등이 된 부분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상당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상당하면 된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이 사건 원심은 “데이터베이스

119)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선택발명의 진보성 인정을 위해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청구취지의 양적 혹은 질적 감축) 등.

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는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양적 상당성과 질적 상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권리 침해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모호하게 판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에 수긍하였을 뿐, 양적 상당성과 질적 상당성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사건 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연구관은 대상판결을 해설한 논문에서 양적 상당성과 질적 상당성이 선택적인 관계라는 관점을 표시했지만,¹²⁰⁾ 대상판결의 판시 문구에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사용된 “및/또는(and/or)”은 우리말의 어법상 공인된 표현은 아니나, 그 앞뒤에 배치된 단어를 각각 따로따로 포함하는 경우에 더해 양자를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까지 지칭하는 관계사로서¹²¹⁾ 영문 법률문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영어 표현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서 상당한 부분의 이용은 그 이용된 부분이 ‘질적으로 상당한 경우’, ‘양적으로 상당한 경우’, ‘질적으로 및 양적으로 상당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유럽연합 지침 내용, 그리고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이 병존 가능한 속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제등이 된 부분의 양적 상당성과 질적 상당성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¹²²⁾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 이익의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규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한 필자의 견해에 따라 양적 상당성의

120) 정현순, 앞의 글(주3), 187면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져간 정보가 ‘양적 상당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뒤에서 살펴볼 ‘질적 상당성’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21) 수리논리학에서는 이를 ‘포괄적 논리합(inclusive or)’이라고 지칭하며, A와 B 중 어느 하나만 가리키는 ‘배타적 논리합(exclusive or)’과 대비된다.

122)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에서는 원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된 정보의 질적 상당성을 근거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 양적으로 적은 양만 사용되었다고 해도 사용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질적인 상당성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다. 함석천, 앞의 글(주 68), 129면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420면, 각주 115에서 재인용).

판단에 있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량적 비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용된 부분에 대한 투자의 상당성이라는 질적 요소를 참작하는 방식으로 질적 상당성을 판단 기준의 중심에 놓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양적 상당성과 질적 상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가 앞서 필자가 대안적 해석 기준으로 주장한 양적 상당성 판단의 탄력적 운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문구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석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예측가능성의 제고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 대상판결 실시의 실천적 의미가 명확히 규명되기 위해 후속 판결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침해 간주 규정에 관한 해석과 법 문언 간의 괴리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침해로 간주되는 소재의 복제등을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양자를 선택적 관계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지침과 문언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CJEU 판시 기준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엄격히 해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재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일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과 일치하지 않고, 그보다 좁은 범위로 자의적으로 요건을 축소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CJEU의 해석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지침의 문언에 기초한 판시까지 그대로 가져온 부주의의 결과로 보인다. 추후 우리 법의 문언과 일치하도록 판시 문구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3) 소재의 생산, 수집 및 갱신등에 관한 평가의 적정성

대상판결은 CJEU의 ‘BHB 사건’ 판시와 동일한 관점에서,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나 소재의 갱신등에 대한 투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질적 상당성의 판단 요소에서 배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권리 발생 요건으로서의 투자의 대상을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으로 명시하고 여기에 소재의 생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문언과 부조화를 낳지는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개별 소재의 보호와 양립하고 그 권리 범위가 개별 소재에 미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소재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소재의 대량 집합물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한 정보들이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이 사건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원심의 논거를 원용하고 그에 따른 결론에 수긍함으로써, 생산과 달리 소재의 ‘수집’은 데이터베이스 보호 근거가 되는 투자의 요소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법리 역시 CJEU 판시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라는 우리 법 문언에 의해 포섭 가능한 해석이다.

다만,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에는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재판연구관의 논문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숙박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위 논문에서는 이를 소재의 ‘생산’으로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¹²³⁾ 엄밀히 말해 상술한 정보를 생산한 자는 숙박업소들이다. ‘BHB 사건’에서 CJEU는 생산과 수집에 대한 각 투자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 권리로써 보호하는 목적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의 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¹²⁴⁾ 피해자의 직원들이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수집한 정보는

123) 정현순, 앞의 글(주3), 188면.

124) Case C-203/02, ECLI:EU:C:2004:695, para. 31.

‘이미 존재하는 정보’였다. 그렇다면 이를 수집한 과정은 소재의 생산이 아닌 ‘수집’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100여 명의 인력 파견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관한 인적 투자임에 의문이 없다.¹²⁵⁾ 또한 이처럼 인력을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유선이나 기타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를 소재의 ‘검증’에 대한 투자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대법원이 위와 같은 인적 투자를 수집이 아닌 생산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부정한 것이라면 그러한 판단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한 정보들이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그 수집에 대한 피해자의 상당한 투자를 부인하는 근

125)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상당한 인력에 의해 수행된 홈페이지 접속, 현장 방문 등의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소재 수집)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평가하여 포섭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2042706 판결(“원고는 전체 직원 50여명 중 상당수가 콘텐츠 수집·개발·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중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관리·운영만을 전담하는 기술연구팀(DataBase Administrator)을 별도로 두고 있다. 원고는 2014. 10.경부터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골프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나 정보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게시 등 공지된 자료를 통해 검색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 골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골프장 운영자들과의 통신을 통해 문의하거나 종이로 된 스코어카드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 애플리케이션 1.0이 출시된 시점까지도 수집한 정보를 계속 수정·보완하였다. (중략)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은 원고가 수집한 정보의 수량, 원고가 정보의 수집과 검증·보완 등을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비용과 시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8가합524486 판결(“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중략) ② 원고의 직원들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하여 수강편람 정보를 수집하고, 이후에도 대학의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수강편람 정보의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재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므로, 수강편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었다”).

거로 실시했다. 그러나 CJEU가 ‘Apis 사건’에서 밝혔듯이 데이터베이스 소재들이 이미 공개된 것 혹은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의 그 수집 등에 대한 투자의 상당성 및 상당한 부분의 이용 여부를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¹²⁶⁾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들이 다른 출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 그러한 사실이 투자의 상당성 판단에 고려되는 것은 당연하지만,¹²⁷⁾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곧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CJEU는 ‘BHB 사건’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공중에 공개하였더라도 그 권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¹²⁸⁾

이러한 CJEU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정보들이 공개된 정보라는 점과 그것이 피해자의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었음을 근거로 그 수집에 대한 피해자의 상당한 투자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당초 공개되어 있던 정보라도 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검증·갱신·보충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데에 권리 인정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수집하고 피고인이 복제한 숙박 관련 정보의 공개 정도, 접근 용이성, 그 수집에 대한 투자의 규모·기간 등에 관해 사실심이 충실하게 판단하였다면 다른 결론이 얻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²⁹⁾ 문제가 된 정보들이 피해자가 공개하여 피해자 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논거를 인용한 점 역시 CJEU 판시 기준과 조화되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부적절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에 제한을

126) Case C-545/07, ECLI:EU:C:2009:132, para. 74.

127) *Id.*

128) Case C-203/02, ECLI:EU:C:2004:695, para. 67.

129) 물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심인 원심판결이 “...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추측에 가까운 사실 인정을 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가장 중요한 요건인 투자의 상당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증명을 검사에게 촉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고 있지 않으므로, 크롤링 대신 수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통상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하여 그에 투여한 자본을 회수한다. 따라서 제작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공개했다는 사실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은 법규정과 상식에 반한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이념 및 내용에 관해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추후 수정되기를 바란다.

4. 전망: 데이터베이스권의 존치에 관해 재검토할 이유

유럽연합의 법제를 논할 때마다 흔히 간과하게 되는 점 중 하나는 유럽연합의 체제적 특수성이다.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유럽연합이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의 정보사회 내지 데이터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정책적 의도에 기해 제정되었다.¹³⁰⁾ 동시에 이 지침은 회원국 간 법제의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 역내시장의 통합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럽연합 체제의 고유성이 반영된 정치적 입법의 산물이다.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정에 고려된 이러한 유럽연합의 배경적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제정 27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침이 의도한 산업정책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 주요 내용을 저작권법제에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미친 긍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증거가 부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따라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준물권적 권리를 부여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을 두고 “선진적 입법흐름에 일찍 합류한 것”이라고 평하는 견해가 있으나,¹³¹⁾ 위와 같은 평가가 현재에도 온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130) Bitton, *supra* note 2, p.1432.

131) 이해완, 앞의 책(주69), 1010면.

회원국들을 제외하면 독자적 권리에 의한 보호 형식을 채택한 국가를 찾기 어렵다. 우리 저작권법은 조약에 의해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여기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¹³²⁾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된 바가 없어¹³³⁾ 데이터베이스 산업 및 관련 규범질서에 관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고립될 위험마저 있다.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증거의 부재나 저작권법 체계와의 부조화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현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자. 과연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큰 공백이 생겨 관련 산업이 후퇴할까?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충적 일반조항¹³⁴⁾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규범은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이 취하고 있는 ‘권리부여형’ 입법과 구별되는 ‘행위규제형’ 보호 방식으로서, ‘독자적 권리’에 의한 현행의 보호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실질적 보호의 관점에서는 이 조항의 도입으로 인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존재 의의는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³⁵⁾ 대span관결에서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민사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다는¹³⁶⁾ 점은 위와 같은 평가를 실증한다. 더 최근인 2021년에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한정제공데이터 규정¹³⁷⁾을 본뜬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공개 규정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추가로 도입되었다.¹³⁸⁾ 일본이 부정경쟁방지법에 한정제공데이터 규정을 신설할 당시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가 그 대안으로서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은¹³⁹⁾ 위 규정을 참조하여 신설된 우리 부정경

132) 저작권법 제91조.

133) 박성호, 앞의 책(주122), 416면.

13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135) 김기정·송석현, 앞의 글(주85), 188면.

136)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4740 판결(불상고 확정).

137)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6호, 제2조 제7항 등.

13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쟁방지법 조항이 데이터베이스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가능성을 보여 준다.¹⁴⁰⁾¹⁴¹⁾ 2003년 무렵에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다소 미비했는지 모르겠으나¹⁴²⁾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실질적인 보호 공백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제정하면서 독자적 권리의 대안이었던 부정경쟁법리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회원국들의 부정경쟁행위 규범이 너무도 상이하여 통일적 규범 마련이 지연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¹⁴³⁾¹⁴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데이터베이스권의 존치 여부에 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존치에 관해 재고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의 검토가 동반되는 것은 시의적이다. 2003년 우리

139) 新たな情報財検討委員会, “データ・人工知能(AI)の利活用促進による産業競争力強化の基盤となる知財システムの構築に向けて”, 2017. 3., 19-21면,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7/jo_hozai/houkokusho.pdf>, 검색일: 2023. 3. 13.

140) 우리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이 도입되기 전, 국회사무처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보호 방안으로 저작권법 개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을 함께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재산권 보호 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권리 부여보다 부정이용 법리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김은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1, 25-29, 35면.

14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 범위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의 그것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김훈건, “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9집 제1호(2022), 271, 280-281면; 박정훈,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고찰 -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2호(2022), 235면 참조.

142) 옜호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Law & Technology』, 제2권 제3호(2006), 40-43면 참조.

143) Stamatoudi & Torremans, *supra* note 24, para. 9.32.

144)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는 분야에서 아직 유럽연합 차원의 제대로 된 지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각 회원국 간 규율이 불통일되어 있는 상황을 시사한다. 박준석,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찰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4호(2021), 163면 참조.

저작권법에 이를 도입할 당시부터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작권과 유사한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근거인 헌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⁴⁵⁾ 미국에서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한 법안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미국연방헌법의 지적재산권 조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⁴⁶⁾ 이에 더해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이 “상당한 부분”,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와 같은 불확정개념들을 권리 침해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점은 적어도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형사법규의 명확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적될 소지가 있다. 불확정한 개념이 사용된 처벌법규의 예측가능성 유무가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 및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려진다고 할 때¹⁴⁷⁾ 앞서 언급한 요소들만으로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내포된 해석상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그 존치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논거로 삼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V. 나가며

이 글은 우리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타당한 해석 기준 도출에 있어 그 모델이 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비판적으로 참고할 필요성과, 그 전제로서 양 법제의 배경 및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

145) 정상조,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9호(2006), 24면(오승중, 앞의 책(주74), 1039면, 각주 168에서 재인용). 한편, 헌법 위반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상의 다른 규정들과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우리 저작권법에 비창작적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제도 도입 이전의 지적도 있었다. 이상정, 앞의 글(주69), 68-69면.

146) Bitton, *supra* note 2, p.1424-1425, n. 69.

147)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등.

하였다. 검토 결과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과 유럽연합의 지침 간에 그 체계 및 문언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되나, 그중 상당 부분은 입법 목적의 공통점에 비추어 주된 해석상 차이를 낳는 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CJEU의 해석론이 우리 법의 해석에도 유효하게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침해 간주 규정의 형식 차이 및 법정허락제도의 유무 등으로 인한 확대 해석의 위험을 인식하는 가운데 가능한 문언의 의미 한계 내에서 신중한 자세로 유럽연합에서 전개된 해석론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에 관해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관한 CJEU의 해석 기준을 수용하여 적절한 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뜻깊게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상판결은 관련 민사사건 판결과 더불어 저작권 유사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현행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의 존재 의의에 관해 의문을 던질 계기를 제공하였다. 차제에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존치 여부와 개정 방향, 바람직한 해석론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개선의 논의가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국내 및 동양)〉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오승중,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6.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한지영,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2005.
中山信弘, 『著作権法』, 第3版, 有斐閣, 2021.

〈단행본(서양)〉

Stamatoudi, Irini & Torremans, Paul, *EU Copyright Law: A Commentary*, 2nd ed., Edward Elgar, 2021.

〈학술지(국내 및 동양)〉

김기정·송석현, “딥러닝과 데이터마이닝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2021).
김현경,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3호(2022).
김훈건, “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9집 제1호(2022).
박정훈,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고찰 -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2호(2022).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2019).
_____,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찰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4호(2021).
박준우,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시장의 정의와 경쟁의 효과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7권 제2호(2000).
안효질, “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 보호동향과 입법방향”, 『계간 저작권』, 제13권 제2호(2000).
염호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Law & Technology』, 제2권 제3호(2006).
이상정,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상)”, 『창작과 권리』, 제23호(2001).

- 정상조,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9호(2006).
- 정현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2호(2022).
- 한지영,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영국경마협회사건과 football경기목록사건 -”, 『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2006).
- 함석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의 요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확정) -”,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2011).
- Hugenholtz, P. Bernt, “새로운 종류인 데이터베이스권: 유럽이 세계로 보내는 선물”, 『정보법학』, 제7권 제1호(2007).

〈학술지(서양)〉

- Bitton, Miriam, “Exploring European Union Copyright Policy through the Lens of the Database Directiv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23 No.4(2008).
- Davison, Mark, “Database Protection: Lessons from Europe, Congress, and WIPO”, *Case Western Reserve Law Review*, Vol.57 Iss.4(2007).
- Lipton, Jacqueline D., “Wikipedia and the European Union Database Directive”,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Vol.26 No.4(2009).
- Maurer, Stephen M. et al., “Europe’s Database Experiment”, *Science*, Vol.294 No.5543(2001).

〈인터넷 자료〉

- 新たな情報財検討委員会, “データ・人工知能(AI)の利活用促進による産業競争力強化の基盤となる知財システムの構築に向けて”, 2017. 3.,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7/johozai/houkokusho.pdf>, 검색일: 2023. 3. 13.
- Hugenholtz, P. Bernt, “Chronicle of the Netherlands: Dutch Copyright Law, 1990-1995”, *KIPDF*, 2001, <https://kipdf.com/fout-verwijzingsbron-niet-gevonden_5ab4184d1723dd349c815b14.html>, 검색일: 2023. 3. 13.

〈연구보고서〉

- 김은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1.

〈기타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COM(92) 24 final, 92/C 156/03 (Jun. 23, 199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asic Proposal for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Databases Consider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Certain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Questions”, Geneva CRNR/DC/6 (Dec. 1996).

Reassessing Database Right Provisions in Copyright Act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322—

RYU, Shiwon

The database rights provision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ere modeled after the *sui generis* right provisions of the EU Database Directive. These provisions, which grant exclusive rights to the creator of a database, have raised concerns about information monopolization, just as the EU Directive did. Against this backdrop,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adopted in *Yanolja Criminal Case*, 2021Do1533 sentenced on May 12, 2022 (hereinafter, “Subject Case”) the interpretation of the CJEU on EU Directive stated in *BHB Case* and others, as well as providing specific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the database rights.

The Subject Case highlights the need for a serious debate on the viability of the database rights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Changes in the legal landscape, such as the critical ideas raised on the EU Database Directive and the expan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norms in the Unfair Competition Act, have led to re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sui generis* rights protection for databases. Following the Subject Case, it is hoped that a comprehensive discussion will resume on how to improve the database protection regime in the future.

Keywords

Database, Database right, Copyright, EU Database Directive, Contents, Collection, Substantial part, Yanolja, 2021Do1533